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충청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488
----------	-----

2024. 1. 30.(화)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 의 자 : 박지현 의원 등 7인
- 나. 발의일자 : 2024년 1월 8일
- 다. 회부일자 : 2024년 1월 9일
- 라. 상정일자 : 2023년 1월 25일
- 제4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: 상정·의결
- 마. 주요내용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박지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산림보호법」 제13조에 따라 보호수의 보호와 역사적·학술적 가치 공유를 위해 충청북도에서 자생하는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- 보호수 지정 신청 및 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 및 안 제5조)
- 보호수 관리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 및 안 제7조)

- 보호수 관리실태 파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- 보호수 지정 및 관리 등의 사무 위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김홍식 수석전문위원)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보존할 가치가 있는 100년 이상의 노목과 거목, 희귀목 등과 같은 보호수는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, 도내에는 총 1,211본이 지정되어 있음.

[시군별 보호수 지정현황]

▷ 지정 현황 : 803개소 1,211본

'23년 6월 기준

구 분	총 계	청주	충주	제천	보은	옥천	영동	증평	진천	괴산	음성	단양
지정개소	803	149	104	72	69	38	53	25	45	119	83	46
지정본수	1,211	167	262	86	164	38	64	36	54	159	83	98

▷ 보호수 현황 : 34종 1,211본

(단위 : 본)

구 분	총 계	느티나무	소나무	은행나무	버드나무	향나무	기 타
합 계	1,211	695	271	62	34	24	125
청주시	167	100	9	32	11	2	13
충주시	262	125	88	4	1	4	40
제천시	86	40	35	2	1	2	6
보은군	164	57	88	4	8	-	7
옥천군	38	25	2	2	4	-	5
영동군	64	47	8	2	2	-	5
증평군	36	22	-	4	2	-	8
진천군	54	38	-	5	1	8	2
괴산군	159	120	24	5	1	4	5
음성군	83	67	2	2	3	4	5
단양군	98	54	15	-	-	-	29

※ 기타 : 125본(말채37, 팽16, 회화7, 느릅12, 상수리8, 엄나무8, 시무6, 층층5, 옷나무4, 돌배1, 모과2, 구지뽕2, 물푸레2, 떡갈2, 아그배1, 측백1, 고로쇠1, 갈참1, 산수유1, 참나무1, 배롱1, 탕자1, 개잎갈1, 비술1, 보리자1, 개비자1, 뽕나무1)

- 충청북도는 「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」 제2조제1항에 근거하여 별표1을 통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사항으로써 보호수 관리를 시·군에 위임하고 있지만, 이번 조례 제정으로 관할구역의 보호수 관리 지원을 보다 명확히 하고, 보호수 지정 및 해제 신청 등에 관한 총괄적 지원과 함께 보호수의 질병 및 훼손 여부를 실질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보호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임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본 조례안은 「산림보호법」 제13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역사적·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(老木) 등의 보호수(이하 “보호수”)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해야 하기에 조례로 제정함이 정당함.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 제2항 제3호와 관련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없어 상위법령의 취지에도 적합함.
- 조례 제정을 통해 추계된 소요예산은 매년 총 2.3억원 가량으로, 도비 등의 재원조달 방안이 강구되어 있으며, 도내 보호수의 보존 증식과 지정 및 해제 신청 관리운영 등의 예산지원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음.
- 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,
 -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
 - 안 제3조는 보호수의 보호와 가치 공유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
 - 안 제4조 및 제5조는 보호수 지정 신청 및 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 - 안 제6조 및 제7조는 보호수 관리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 - 안 제8조는 보호수의 관리실태 파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- 조례안 예고('24. 1. 11. ~ 1. 17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본 조례는 '24년 1월 기준 12개 시·도가 제정·시행 중이며, 문제된 사항이 없음.
- 제정안은 총 9개의 조문이며, 조문상의 내용과 구성은 입법담당이 검토하여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도록 하였고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, 「산림보호법」 등에 근거하여 충청북도와 역사를 같이 해 온 보호수의 보호 가치를 높이고,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가치있는 수목자원에 대해 보호수의 지정·해제 신청이 시의적절히 조치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필요에 따라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충청북도는 보호수 관리에 대하여 시·군에 위임된 사무를 총괄 하여 지원 관리하는 제반사항을 구체화하고, 보호수 정비사업 등을 통한 보호수 보호 내실화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임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6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7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8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등

충청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 서식하는 역사적·학술적 가치 등이 있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의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보호수”란 「산림보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3조에 따른 보호수를 말한다.
2. “관리기관”이란 「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」 제2조제1항에 따라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·군수를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도지사는 보호수의 보호를 통한 역사적·학술적 가치 등을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고,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보호수 지정 신청) ① 보호수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나무의 소유자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리기관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은 현장조사 등 보호수 지정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보호수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수 지정 신청기준·절차·방법 및 조사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제5조(보호수 표지) 도지사는 보호수가 있는 토지에 보호수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.

제6조(보호수 관리) ① 도지사는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인가·허가를 하기 전에 보호수에 인접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가 보호수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, 보호수가

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1. 도로, 상하수도 시설, 전기·통신시설, 건축 등의 사업행위

2.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

3. 그 밖에 보호수의 생육에 해(害)가 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

② 도지사는 보호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,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보호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및 토지를 매수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. 이 경우 매수가격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.

제7조(보호수 지정해제 신청) ① 보호수의 소유자나 해당 보호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기관을 거쳐 도지사에게 보호수의 지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인해 보호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보호수가 수명을 다해서 그대로 두면 사람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그 밖에 보호수 지정 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지정 목적에 미달되어서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보호수 지정해제의 신청절차·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제8조(관리실태 파악) 도지사는 보호수 지정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9조(사무의 위임) 도지사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보호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【산림보호법】

제13조(보호수의 지정·고시) ① 시·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역사적·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(老木), 거목(巨木), 희귀목(稀貴木)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(이하 “보호수”라 한다)로 지정하여야 한다.

② 시·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,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. <개정 2020. 3. 24.>

1. 지정 사유
2.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
3. 지정 대상 나무의 나무종류, 나무나이, 나무높이, 가슴높이지름, 수관폭(樹冠幅) 등
4.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
5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~ ⑤ (생략)

⑥ 보호수의 지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[전문개정 2019. 1. 8.]

충청북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도내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을 보호수로 지정·확대하여 훼손을 방지하고 생육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의 대표성을 갖는 수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함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역사적·학술적 가치가 있는 도내 보호수의 보존·증식과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

3. 관련조문

- 조례안 제3조(도지사의 책무)
 - 도지사는 보호수의 보호와 보호수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고,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 5년간으로 함
- 추계기간(5년간)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
- 물가상승,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
- 조례안 제3조(도지사의 책무)에 의거 도내 보호수의 보존·증식과 운영관리 등에 대한 비용 추계

나. 추계 결과 : 1,176,385천원

- 연 사업당 최대 235,277천원 소요 예상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, 시군비(도 30%, 시군 70%)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〈 연도별 비용 추계표 〉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4년)	2차년도 (2025년)	3차년도 (2026년)	4차년도 (2027년)	5차년도 (2028년)	계
세 입		-	-	-	-	-	-
-		-	-	-	-	-	-
세 출		235,277	235,277	235,277	235,277	235,277	1,176,385
(안 제3조) 보호수 정비사업 지원		235,277	235,277	235,277	235,277	235,277	1,176,385
재원 조달		235,277	235,277	235,277	235,277	235,277	1,176,385
의존 재원	소 계	-	-	-	-	-	-
	보조금	-	-	-	-	-	-
	지방교부세	-	-	-	-	-	-
자체 수입	소 계	70,583	70,583	70,583	70,583	70,583	352,915
	지방세	70,583	70,583	70,583	70,583	70,583	352,915
	세외수입	-	-	-	-	-	-
지방채		-	-	-	-	-	-
기 금		-	-	-	-	-	-
시·군비		164,694	164,694	164,694	164,694	164,694	823,470
기 타 (차입금, 민자, 예비비 등)		-	-	-	-	-	-